



#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 사항 안내

[시행일 : 2022. 12. 1.]

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,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김포소방서장

## 종류 및 시기

자체점검 미 실시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### 1. 최초점검

- 대 상 :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3급 이상 대상물
- 시 기 :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**60일 이내** 종합점검 실시
- 점검자격 : 소방시설관리업자,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

### 2. 작동점검

- 대 상 :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이상
- 시 기 : **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**까지 실시  
종합점검대상(관계인 점검불가)은 **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**에 실시
- 점검자격 :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
※ 단,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관계인 또는 특급점검자 점검가능

### 3. 종합점검

- 대 상
  - ▶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
  - ▶ 물분무등소화설비(호스릴방식 제외)가 설치된 연면적 5천㎡이상 특정소방대상물
  - ▶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설치 건물로 2천㎡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
(유흥, 단란주점, 영화관, 비디오감상실, 노래방, 산후조리원, 고시원, 안마시술소)
  - ▶ 연면적 1천㎡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
- 시 기 : **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**까지 실시  
(단, 공공기관 학교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~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실시 가능)
- 점검자격 : 소방시설관리업자,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

### 4.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

-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 :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점검
- 종합점검 실시 공동주택 :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

## 면제 또는 연기신청,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신청

- 재난 발생으로 이행이 어려움 :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 제3조 제1호
-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되어 이행이 어려움 : 경매 등의 사유
- 관계인이 이행이 어려움 : 질병, 사고, 장기출장 등
- 그 밖에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

○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기한 :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**3일 전까지** 관련서류 제출

○ 이행계획의 연기 신청 기한 : 자체점검 이행계획의 만료일 **3일 전까지** 관련서류 제출

## 자체점검 결과보고

### 초일, 토요일, 공휴일 미산입

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업자 등 : 300만원 과태료

자체점검 미보고/거짓보고 관계인 : 300만원 이하 과태료

구분	10일 미만	10일 이상 1개월 미만	1개월 이상 또는 미보고	거짓 보고
금액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
-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
  - 점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
- 관계인이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
  -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와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소방서에 보고
-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 이행을 완료한 경우
  -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,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보고
- 제출방법 ▶ 김포소방서 1층 자체점검 방문(김포시 감암로 111)
  - ▶ 소민터 등록(www.somin.go.kr)
  - ▶ 등기우편(도착일 기준)

## 자체점검 결과 게시

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(1차 : 100만원, 2차: 200만원, 3차: 300만원)

- 관계인이 자체점검 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(소방시설법 시행규칙 [별표5])를 작성, 출입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



## 자체점검 이행기간

### 초일, 토요일, 공휴일 산입

중대위반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않은 관리업자 등 : 300만원 이하 벌금

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 미완료·미제출·거짓보고 관계인 : 300만원 이하 과태료

구분	10일 미만	10일 이상 1개월 미만	1개월 이상 또는 미보고	거짓 보고
금액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
- 중대위반사항 - 관리업자 등은 즉시 관계인에 알리고 관계인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
### 【 중대 위반사항 】

- ▶ 소화펌프, 동력·감시제어반 또는 전원의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
  - ▶ 수신기의 고장으로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능한 경우
  - ▶ 소화배관 등이 폐쇄·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
  - ▶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
-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기계·기구를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: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
  - 소방시설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 :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
  - 제출방법 ▶ 김포소방서 1층 자체점검 방문(김포시 감암로 111)
    - ▶ 소민터 등록(www.somin.go.kr)
    - ▶ 김포소방서 홈페이지 글쓰기(소방민원 - 자체점검 조치명령 결과 제출 - 비밀글쓰기)
    - ▶ 김포소방서 이메일 송부(gimpoll19@gg.go.kr)

기타 문의사항 : 김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자체점검 담당자 : ☎ 031-980-4368, 4371